

海外建設促進法

◎ 法律第 2,855 號

海外建設促進法

第 1 條 (目的) 이 법은 海外建設을 促進하여 海外建設을 振興하고 海外建設工事的 適正한 施工을 기하게 함으로써 國際收支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兪注되는 土木·建築 기타 工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海外建設用役”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的 調査·計劃·設計·監理·諮問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3.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都給·下都給” 기타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用役(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都給받는 營業을 말한다.

第 3 條 (他法과의 關係) 海外建設業에 關하여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建設業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條 (海外建設業의 免許) ① 海外建設業을 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種類別로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免許를 받는 者
2. 技術用役有成法의 規定에 의한 技術用役業 登錄을 받은 者 및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登錄을 한 者
3. 海外建設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③ 建設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은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第 5 條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이 될 技術能力·資本金(個人인 경우에는 財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施設·裝備 또는 工事実績등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6 條 (受注擔當會社의 設立)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또는 第 4 條第 2 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單獨 또는 共同으로 出資하여 海外工事의 受注(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業務만을 擔當하는 法人(이것 “受注擔當會社”라 한다)을 設立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受注擔當會社에 대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은 第 5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受注擔當會社에 대하여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 기타 支援을 할 수 있다.

第 7 條 (手数料)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8 條 (海外建設業者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法人에 있어서는 그 任員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또한 같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申請日 現在 계속하여 3 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한 者. 다만 業

務上一時的으로 海外에出張한 期間은 国内居住期間으로 본다.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者
3. 第19條第2號 내지 第7號의 事由로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되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
4.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完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
5. 國家保安法·反共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2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者로서 刑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의 失効宣告를 받지 아니한者

② 海外建設業者가 第1項의 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免許의 效力은 喪失한다.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事由에 해당하는 때에는 1月이 내에 그 任員을 改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第9條 (海外工事의 都給許可) ①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都給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海外建設業者가 外國에서 海外工事를 都給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時急을 요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의 許可를 받아 海外工事를 都給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한 在外公館長은 建設部長官에게 遲滯없이 보고하여 追認을 얻어야 한다.

第10條 (許可의 통지)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工事의 都給을 許可 또는 追認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관계 기관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통지를 받은 관계機關의 長은 필요한 協助나 支援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海外工事都給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追認을 받을 수 없다.

1. 政府機關·公共團體 또는 外國機關으로부터 出入停止處分을 받고 解除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부실한 事由가 있는者
2. 第19條第4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
3. 第20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取消處分을 받은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

第12條 (新規 海外市場開拓者에 대한 都給許可의

優先) 海外建設業者가 새로운 海外市場을 開拓하여 당해 地域의 海外建設振興에 寄與한 功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에서의 海外工事의 都給을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13條 (海外工事受注活動計劃의 申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受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注活動計劃을 미리 建設部長官과 당해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4條 (調整命令) ① 建設部長官은 同一한 海外工事に 대하여 2人 이상의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에 受注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이나, 勸告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勸告 또는 命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機關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5條 (合作施工 등의 勸告)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國際競爭力의 強化와 大規模工事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海外建設業者 2人 이상의 合作을 勸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作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6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6條 (進出地域 또는 工事都給의 制限)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의 過當競爭의 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別 또는 地域別로 進出業者의 數를 制限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海外工事의 健全한 施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外建設業者가 都給받을 수 있는 一件工事의 限度額과 重複하여 都給 또는 施工할 수 있는 總限度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第17條 (海外建設獎勵補助金の 交付) 正府는 海外建設을 獎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規市場開拓費, 海外市場調査費, 海外에 중시시킬 要員의 訓練費 등의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내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18條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支援)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正府支援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 이외에는 海外建設業者를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業者로 본다.

第19條 (海外建設業의 免許取消 또는 營業停止)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処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詐偽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때
3. 海外工事의 粗雜施工·遲延·부당한 勞賃拂拂로 顯著하게 國威를 損傷시킨 때
4. 落札후 正當한 事由없이 契約을 포기한 때
5. 海外工事都給許可없이 海外工事を 受注한 때
6. 海外工事都給許可를 받고 正當한 事由없이 入札에 不參함으로써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進出에 支障을 招來한 때
7.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때
8.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海外工事都給을 방해한 때
9.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후 3年 이내에 海外工事都給実績이 없거나 계속하여 3年 이상 海外工事を 都給받지 아니한 때

第20條 (海外工事의 都給許可의 取消)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된 때
2. 詐偽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때

第21條 (施工 및 經營實態의 調査 등) ①建設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 등 關係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經營實態 또는 海外工事의 施工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報告義務)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を 受注하거나 施工하는 경우에는 그 受注活動 및 施工狀況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3條 (海外建設設計圖의 樹立) 建設部長官은 每年 海外建設市場을 調査하여 翌年度 海外建設設計圖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24條 (免許取消된 海外建設業者의 계속工事) ① 第8條第2項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免許의 效力이 喪失되거나 免許가 取消된者 또는 그 包括承繼를 한 者는 그 喪失 또는 取消 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의한 海外工事に 한하여

계속 施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を 계속하는 者는 당해 工事を 完成할 때까지 海外建設業者로 본다.

第25條 (罰 則) 海外建設業者가 故意 또는 業務上 重大한 過失로 海外工事を 粗雜하게 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후 당해 工事의 瑕疵補修期間 내에 目的物에 重大한 損壞가 생긴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 (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海外建設業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營爲한 者
2. 海外工事都給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工事を 都給받는 者
3. 不正한 手段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 또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者

第27條 (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하거나 調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第13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보고義務를 怠慢히 하거나 虛偽로 보고한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요구하는 資料를 虛偽로 作成하거나 不応한 者

第28條 (報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自然人的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的 業務에 關하여 第25條 내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自然人에 대하여도 해당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할 수 있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와 당해 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建設業法의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